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 소속 근로자 포함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22호)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62호)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92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 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수진의원안】	1
【박해철의원안】	2
【강득구의원안】	3
II. 검토의견	4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 소속 근로자 포함	4

I. 제안경위·이유 및 주요내용

【이수진의원안】

1.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이수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박해철의원안】

1.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박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강득구의원안】

1. 제안경위

2024년 10월 7일 강득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II. 검토의견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 소속 근로자 포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이수진의원안	박해철의원안	강득구의원안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 ----- ----- ----- ----- --16명----- ----- -----.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	④ ----- ----- ----- ----- -----	④ ----- -----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	④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이
경우 비상임이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
다.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
능력개발과
자격제도·
자격검정 등
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
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
자대표(근로
자의 과반수

이사로 선임되
는 사람은 제
외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
로서 임원추천
위원회가-----

. <후
단 삭제>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
능력개발과
자격제도·
자격검정 등
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
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서 임원추천위원
회가-----
-----, <후단
삭제>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
능력개발과
자격제도 ·
자격검정 등
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
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⑤ · ⑥ (생략)	<u>로</u> <u>조직된</u> <u>노동조합이</u> <u>있는 경우</u> <u>그 노동조합</u> <u>의 대표자를</u> <u>말한다)의 추</u> <u>천이나 근로</u> <u>자 과반수의</u> <u>동의를 받은</u> <u>사람 1인</u> ⑤ · ⑥ (현행과 같음)	<u>에 따른 근로</u> <u>자를 말한</u> <u>다. 이하 이</u> <u>조에서 같다)</u> <u>중에서 근로</u> <u>자대표(근로</u> <u>자의 과반수</u> <u>로 조직된</u> <u>노동조합이</u> <u>있는 경우</u> <u>그 노동조합</u> <u>의 대표자를</u> <u>말한다)의 추</u> <u>천이나 근로</u> <u>자 과반수의</u> <u>동의를 받은</u> <u>사람</u> ⑤ · ⑥ (현행과 같음)	<u>에 따른 근로</u> <u>자를 말한</u> <u>다. 이하 이</u> <u>조에서 같다)</u> <u>중에서 근로</u> <u>자대표(근로</u> <u>자의 과반수</u> <u>로 조직된</u> <u>노동조합이</u> <u>있는 경우</u> <u>그 노동조합</u> <u>의 대표자를</u> <u>말한다)의 추</u> <u>천이나 근로</u> <u>자 과반수의</u> <u>동의를 받은</u> <u>사람</u> ⑤ · ⑥ (현행과 같음)
-------------------	--	--	--

나. 검토의견

노동이사제란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 도입된 뒤,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함)이 개정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¹⁾.

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함)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이른바 노동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²⁾

1)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2) 공공기관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표]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유형구분		공통요건	지정요건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체수입비율 ≥ 85%인 기관 (& 자산2조원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자체수입비율 50% ~ 8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기관임.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³⁾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바,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의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수진의원안은 이사 수를 현행 15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박해철의원안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음.

[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이수진의원안	박해철의원안	강득구의원안
이사 수	15명	16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상임이사 구성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 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 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이수진의원안과 같음. 단, 제4호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함)	(박해철의원안과 같음)

3) 현행법은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있음.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 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4.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		
당연직 비상임이사 규정 방식	대통령령	(현행과 같음)	정관	(현행과 같음)

다만, 이수진의원안의 경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의 최대인원을 16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운영법」 제18조제1항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사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수진의원안처럼 이사의 최대인원을 16명으로 확대할 경우 「공공기관운영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동이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⁵⁾.

4) 「공공기관운영법」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5) 「공공기관운영법」은 다음과 같이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박해철의원안은 시행일이 공포한 날인데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할 경우 시행령 개정 및 정관 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4년 11월 22일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9명으로 13명의 이사가 있고, 1명의 감사까지 포함하면 총 임원은 14명임.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② (생략)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비상임이사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므로, 노동이사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략)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

[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현황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우영	
상임이사	김영중	
	천학기	
	김규석	
비상임이사	이동근	사용자대표
	류기섭	근로자대표
	권순원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장혜정	
	윤소영	당연직(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권태성	당연직(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조용범	당연직(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강감찬	당연직(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홍순정	당연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감사	권통일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재편집

문 의 처

02)6788-5538